

2023년도 정착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
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「2023년도 정착지원 관련 정책연구과제」 연구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2023. 6. 9.
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

1. 공모 과제

○ 연구주제 및 선정 건수

(단위: 천원)

구분	연구주제	선정 건수	지원금액
자유주제	(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, 연구자 자율 선정)	1건	15,000

2. 개요

가. 계약기간 : 계약 체결일(6월 중) ~ 2023. 10. 31.

나. 지원 규모 : 15,000천원 이내 / 1건

다. 신청 자격

○ 연구 참여기관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당해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자 등에 대한 지도·감독 능력을 갖춘 기관(대학, 기업, 연구기관 등)

- ①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 책임
- ② 연구인력, 연구시설 및 연구행정의 지원
- ③ 연구비 관리, 연구비 정산, 중간·최종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- ④ 연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
- ⑤ 연구비 관리, 정보보호 등 현장점검 협조
- ⑥ 그 밖에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

- 연구팀의 책임연구원은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해야 함

- ① 대학(교)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
- ②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
- ③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자
- ④ 기타 정책연구 조사 수행에 적합한 기관

3. 공모일정 및 방법

가. 접수기한 : ~ 2023. 6. 21(수) 18:00까지

※ 접수마감일 18:00 이후 접수 불가

나. 접수방법 : 전자메일 접수, pphm1157@nkrf.or.kr

* 전자메일 제목은 '과제명-연구책임자 성명'으로 기재하고 내용에 연락처(휴대전화번호)를 반드시 기재

** 연구과제 신청서 접수 확인은 메일로 회신

※ 발송 후 영업일 2일 이내 접수 회신이 없는 경우 담당자(☎02-3215-5716)에 전화 문의 요망

다. 제출서류 * 첨부양식 참조

- ① 신청 공문
- ② 정책연구과제 신청서, 정책연구과제 연구계획서
- ③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
- ④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일 경우)
- 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참여연구원 전체)
- ⑥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분납 계획서
- ⑦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(북한이탈주민 연구자에 한함)

4. 선정심사

가. 연구자 선정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 '협상에 의한 계약' 절차를 준용

나. 연구계획서 평가 기준은 [별첨 3] 연구계획서 심사표 참조

※ 북한이탈주민 연구자가 참여한 연구팀 가점(5점) 부여

다. 결과통보 : 선정 즉시 접수한 메일주소로 개별 통보(6월말 예정)

5. 유의사항

가. 계약체결

- 연구지원 선정 확정 후 절차에 따라 재단과 연구용역 계약 체결
 - 계약체결 후 요청에 한해 연구비 70% 선지급, 연구비 30%는 최종보고서 평가 결과 승인 시 지급
 - * 지급액은 집행인정액에 한하며, 연구비 산정·집행기준은 [별첨6] 참고
- 선정 당시 신청서상 연구내용, 연구비 산정·집행기준 등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을 시 연구자는 계약 전 재단 연구협력관과 협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.
- 선정된 연구기관은 계약이행과 관련한 보증보험증권(전체 연구비*15%)을 제출해야 함.

나. 결과 제출

- 연구 결과 제출 후 수령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
- 수정본 제출 시 **수정보완대비표**를 함께 제출해야 함
- 최종보고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한글파일로 작성
 - 여백, 각주, 참고문헌 등 [별첨 5] 참조
- ※ 과도한 표, 그림, 인용문 등은 분량에서 제외할 수 있음.

다. 연구비 집행

- 집행기준 : 「정책연구과제 관리지침(재단)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」,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 등
-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비 정산서류(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, 증빙 영수증, 회의록, 거래명세서 등 첨부) 제출
- 연구비 사용 계획 작성과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은 [별첨 6] 참고
- 연구비 중 인건비 비율은 70%를 넘을 수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접수된 연구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
- 재단은 최종보고서를 기준으로 표절 검사를 실시
 - ※ 검사 결과 표절로 판단된 경우 재단은 즉시 계약을 해제하며 지급된 연구비는 환수함
-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계약취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
- 당해 선정된 연구팀의 최종보고서는 재단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, 평가 결과 책임연구자의 귀책사유가 ‘연구결과 불량,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등」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(부정행위)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남북하나재단 정책연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□ 첨부양식

- [별첨 1]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(양식) 1부.
- [별첨 2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양식) 1부.
- [별첨 3] 연구계획서 심사표 1부.
- [별첨 4]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내역서(양식) 1부.
- [별첨 5] 최종보고서(양식) 1부.
- [별첨 6] 연구용역비 산정·집행기준표 1부. 끝.